

『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11월 18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1월 26일

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곤

나. 제안이유

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
변경사항 반영하고 요금감면 및 요금조정 대상 추가

다. 주요내용

○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
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

· 현행 : 시설분담금 → 개정 : 원인자부담금

○ 긴급누수복구공사 등으로 인한 요금감면(안 제41조의 2)

○ 가구별 요금조정 대상에 전원주택단지 추가(안 제32조)

○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수도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정

○ 본 「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요금감면 조항에 긴급누수복구공사로 인한 내용을 명시하고 가구별 요금조정 대상에 전원주택단지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